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상정된 안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1
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3

(10시31분 개의)

○소위원장 복기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시에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10시32분)

○소위원장 복기왕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들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비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는 납부한 유류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가보조금의 지급 한도가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로 제한되고 유류세 인하 시 유류세에 연동된 보조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가 상황 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류의 구매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객과 물류종사자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유가보조금 지급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통합특별시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규정 등의 주체에도 국토교통부장관·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을 지원 주체로 추가하면서 이 법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이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2차관 홍지선입니다.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송기현 위원 의견은 없는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중에 아직까지 전세버스 부분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세버스가 사실상 70% 이상이 실질적으로 통학이나 통근 등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떠나서,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걸 다 떠나서 지금 전세버스에 관련된 종사자들도 유가가 오른 것에 대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아니면 거기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장관님 하고 관련 실국장, 관계 공무원 또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적극적인 방안을 당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텐데, 국회에서도 각자 검토가 있을 텐데 국회와 잘 협의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빠지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잠시만, 토론은 종결하고 공항경제법 먼저 하고 이걸 올려야지요.

○**소위원장 복기왕** 통으로?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3)

(10시36분)

○**소위원장 복기왕**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자료 2쪽입니다.

제정안은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항이 지역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이며, 공항이 교통거점의 역할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이견이 있어 부처 등 제출 의견과 발의하신 의원실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이견이 조정되었고 공항운영자를 공항경제권 사업비용의 주체에 포함할지 여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는 조문별 검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1.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공항경제권의 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육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제명을 ‘공항경제권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항경제권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공항경제권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은 관련 공항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무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운영자의 법정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공항운영자의 책무를 의무적·주도적 역할에서 협력 중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3. 사업비의 지원 및 조세·부담금 등의 감면입니다.

안 제6조는 공항경제권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안 제38조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38조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및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은 다른 지역이나 사업 등과의 형평성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부처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하였습니다.

자료 27쪽입니다.

조세 및 지방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법에서 세제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규정의 실익이 적다고 보아 미반영하였고, 부담금 등의 감면 규정은 각 부담금 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부처 의견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4.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항공산업의 육성·진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중복되므로 내용을 차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 공항경제권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계획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당성 검토주기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33쪽입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초조사 분석,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공항경제권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선정하게 되나 조정안에서는 이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 요청의 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을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5. 공항경제권위원회 및 공항경제권지원단의 설치입니다.

안 제12조는 공항경제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시도에 공항경제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항공정책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항경제권지원단도 두지 않

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료 56쪽입니다.

6.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대한 특례, 적합업종의 지정입니다.

안 제15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시설용지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안에서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료 62쪽입니다.

7. 공항경제권 개발 관련 규정입니다.

제3장의 공항경제권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들인데 조정안에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을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정안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80쪽입니다.

8. 비용의 부담 등입니다.

조정안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항운영자는 제12조에 따른 공항경제권사업계획에 포함된 공항경제권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양 공항공사에서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사업 범위에도 불구하고 공항경제권 개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원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5쪽입니다.

9. 보칙 및 벌칙입니다.

보칙에서는 개발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문, 권리·의무의 이전은 삭제하였고 벌칙에서는 개발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90쪽, 부칙입니다.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국토부2차관 홍지선입니다.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공항경제권을 지정·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을 하며 관계기관 의견 등을 반영해서 조정안을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서 81페이지에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인천국제공항법과 한국공항공사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건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맞습니다.

자료 84쪽을 보시면 제17조(사업비의 지원 등)에서 사업비 지원 주체에 공항운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공항공사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배준영 위원님 의견을 주시지요.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이 법은 전국에 있는 공항과 지역의 협력을 통해서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비용도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다만 이 법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급성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관련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우선 법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법을 개정 한 이후에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준영 위원 그러면 한국공항공사법이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도 있을 텐데 먼저 이 법의 틀을 잡고 시작을 하고 나중에 다른 법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 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낸 의견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법에 넣고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면 되지.

○배준영 위원 이 법에 넣고요.

○정점식 위원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항만공사법이 항만공사 전체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가 이 조항 자체가 8조(사업)에서 1항 6호의3을 신설해서 어떤 걸 넣느냐 하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추가로 넣어 가지고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원 법안에 넣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준영 위원님이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추가 법률 개정할 때……

○송기현 위원 그때 왜 대구공항 이전할 때도 거기 관련된 것 지원하는 데 대해서 한국공항공사법을 변경한 적 있잖아요. 어쨌든 김도읍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를 먼저 해 놓고 하면 일단 법에 되어 있지만 그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치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적절하게 한다면 그 공항공사법을 먼저 고치고 동시에 같이 고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손명수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적극 지지하고 그 취지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금 이 공항경제권이라는 게 일종에 공항구역 외의 지역이잖아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만들고 주변지역을 개발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잖아요.

○배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 주변 공항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금 현재 법의 취지로 보면……

○배준영 위원 인접한 지역입니다.

○손명수 위원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지금 그런 체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은 공항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양 주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게. 그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됐을 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양 공사법도.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이 사업에 양 공사가 출연이나 재원을 보조하게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사업 시스템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 공항경제권 인접구역을 발전시키려면 양 공항공사가 자기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직접 하는 사업 트랙이 하나 있고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든 이 체계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해서 하는 트랙이 있고 그것을 구분해야지 이것을 섞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들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재정 비용부담의 주체에서 공항운영자는 빼고 민간사업자가 일단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익을 내야 돼요. 이익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걸 혼자 다 하기 어렵고 인프라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항운영자도 같이 끼게 만들어 버리면 지금 양 공항공사법에 따른 그 법체계 시스템하고 이 두 개가 엮여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공항운영자를 빼고 가는 게 오히려 이 법의 취지에도 맞고 이게 잘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법 9조 1항 1의2호를 보면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해서도 공항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넣어 놓고, 그러니까 법 자체가 공항과 관련성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인 것 같으면 그건 하면 안 되지요.

○손명수 위원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9조에 보시면 1호부터 10호까지 쭉 있잖아요. 이 사업을 공항공사가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어. 거기서 주체로 하는 거예요, 주체로.

○김도읍 위원 그래요.

○손명수 위원 그런데 이 공항경제권 사업의 주체는 민간사업자라니까요. 그 민간사업자가 하는 주체에 공항공사가 또 끼게 되면 이게 엮인다니까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빼고 가는 게 맞다니까. 오히려 더 잘돼요, 이게. 그런 취지예요.

○**김도읍 위원** 이게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넣어 놓는 것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게, 예컨대 공항터미널 내, 그러니까 공항시설 내에 주차장이 태부족이에요, 어느 공항이든. 그런데 만약 지자체에서 공항 밖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영주차장이 될 터인데 이게 수익은 사실상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공항운영사가, 공항공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고 주민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컨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손명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항공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사업을 해요. 수익도 자기가 가져가요, 비용도 자기가 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면서 연결도로가 부족하거나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도와줘서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공항운영자가 같이 투자를 하면 이걸 나눠야 돼. 복잡해진다니까요. 오히려 사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 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손명수 위원** 이걸 지금 민간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잖아요.

○**김도읍 위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소위원장 복기왕** 자, 잠시만요.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꼭 그렇지 않은 게, 공항 경계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을 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이십니까?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예, 공항정책관입니다.

○**김도읍 위원** 공항정책관님, 공항 울타리 있지요? 울타리에 바로 인접해 갖고 있는 가장자리 땅들의 소유가 주로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민간 소유도 있고 또 일부는 그 구획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지. 정책관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대부분이 국토부 소유이거나 공항공사 소유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완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예컨대 김해공항을 보면 김해공항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왼쪽으로 쪽 가면 전부 다 공항에서 나오는 배수로예요.

차관님, 잘 들으십시오.

물이 새카매했어요. 그리고 수초가 자라 가지고……

김해공항이 군부대까지 해 가지고 몇 평인지 압니까?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200만 평이에요. 200만 평이 완전히 콘크리트잖아요. 통으로 된 콘크리트잖아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집중호우가 요즘 얼마나 잦습니까? 거기에서 그 물들이 그리 다 내려온

다고. 그때 대한항공 테크센터부터 해 가지고 각종 오폐수들이 다 실려 내려오고 그래서 그 물이 마르면 새카맣게 변하고 수초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 거기에서 범람하고 여기까지 가고, 관리가 안 된다고요.

이런 건 민간에 맡길 수가 없다니깐요. 이것도 공항경제권 개발사업이잖아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다른 공항도 태반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누가 하느냐?

그런데 내가 해 보니까 국토부, 공항공사 다 미뤄요, 다 미뤄. 나는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넣어야 된다. 일단 넣고 공항공사법의 관련 규정을, 어차피 이게 시행 시기가…… 조금 전에 송기현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유예기간을, 지금 시행 시기를 1년 뒤로, 공포 후 1년 뒤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사이에 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바꾸면 된다고요.

○**손명수 위원** 배 위원님이 정리하시지요. 위원님, 이게 충돌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소위원장 복기왕**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현재 충돌되고 있는 지점을 해소하려면 손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운영자만 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민간이라고 표현하셔서 그런데 이게 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혹은 민관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이 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사업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공항사업자는 그들 각각 고유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돌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전문위원, 제 해석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오세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맞지요?

그래서 그것만 빼고 진행해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어떤가요?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혹시 만약에 이것이 취지에 어긋나게끔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향후에 3개 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배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더 토론 있으십니까?

○**송기현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볼 게, 전문위원이 이렇게 수정안 만들 때 배준영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수정을 하신 건가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맞습니다. 의원실과 협의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의원실과 협의한 거예요?

○**배준영 위원** 예, 협의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우리가 일일이 축조를 못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52쪽에 있는 공항경제권지원단은 시도 걸 뺀다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오세일** 그것도 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도 거기다 안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천시에는 안 두고 조례로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에 안 두고.

이런 건 다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전문위원 오세일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해가 가지지요?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것 아마 담당 실무자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 결국은 콘크리트 박스화해 가지고 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수로도 열리고 오페수 새카만 그걸 가지고 민원도 안 생기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몇십 년 된 민원이거든요.

그것 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국토교통부공항정책관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일 제명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 30일 처리한 안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도읍 김희정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엄태영 윤종오 이연희 정점식
천준호

○청가 위원(2인)

윤재옥 한준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지선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공항정책관 이상헌